청원요지서

접수번호	33		접수연월일	2020. 12. 8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노원구 덕릉로		
	성 명	모상종 외 307명		
소개의원 (소속위원회)	홍성룡(도시안전건설), 노식래(도시계획관리)			
건 명	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			
소관위원회		도시계획관리		

○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으로 진행된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일괄임대에 대한 SH공사 임대료 보장 정책이 2020. 5월 종료됨에 따라, 개별 소유자들이 동년 6월 SH공사가 진행한 NC백화점 일괄임대 재계약 사례와 동일하게 물류시설법의 차임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SH공사에서 수용을 거부함.

가든파이브는 물류시설법에 의거 건설되었고,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임대하는 경우 동 법에 의거 임대료를 산정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 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SH공사는 현대백화점과 일괄임대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, 같은 건물에 입점한 NC백화점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.

이러한 SH공사의 다른 계약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소유자간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바, 이에, 현대백화점 일괄임대 계약에서도 NC백화점 재계약과 동일하게 물류시설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원함.